

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10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- 가.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·시민·공무원 등에 대하여 우리시가 관리하는 교통전문기관인 교통연수원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
- 나. 용어의 정의 등 필요한 규정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운수종사원 교육 외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교통취약자(어린이, 노인 등) 및 시민,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(안 제1조, 안 제3조)
- 나. 교통연수원의 업무에 “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”을 신설함(안 제4조제5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실·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(14-6쪽)
- 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(14-7쪽)

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시민,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연수원”을 “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”로, “계산동 758-1번지”를 “경명로 552”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이 조례에서 “운수종사자”라 함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, 운전자,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.
2. “시민”이라 함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, 사업장종사자 등을 말한다.
3. “공무원”이라 함은 시 및 군·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
제4조 각 호의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여 같은 호를 제6호로 하며, 제5호를 다음

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

제5조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시”로,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「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」에 의한다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시민, 공무원 등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 (위치) 연수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<u>계산동 758-1번지</u>에 둔다.</p>	<p>제2조 (위치)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----- 경명로 552-----</p>
<p>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라 함은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과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, 운전자,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.</p>	<p>제3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이 조례에서 “운수종사자”라 함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체의 경영자, 운전자, 교육훈련담당자를 말한다. 2. “시민”이라 함은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시 소재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, 사업장종사자 등을 말한다. 3. “공무원”이라 함은 시 및 군·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.
<p>제4조 (업무) 연수원은 다음 <u>각호</u>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 <p>5. 기타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4조 (업무) 연수원은 다음 <u>각 호</u>의 업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시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6.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연수원의 운영) 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<u>인천광역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보조금 및 <u>기타</u> 수입으로 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5조 (연수원의 운영) ① ----- ----- <u>시</u>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 (준용)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「<u>인천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</u>」에 의한다.</p>	<p>제8조 (준용) 연수원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「<u>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</u>」에 따른다.</p>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관계법령	<p>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</p> <p>○ 제25조 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</p> <p>○ 제58조(운수종사자의 교육 등) ①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(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.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. 교통안전수칙 4. 응급처치의 방법 5.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<p>②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,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